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52 발의연월일: 2022. 8. 2.

발 의 자:서영교・신정훈・양기대

유정주 • 윤준병 • 이개호

이용빈 · 임오경 · 임호선

전혜숙 · 최인호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, 쌀 소비량 감소, 농약·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 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, 농지의 효 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	<u>=</u> ) ①
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	
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	
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	
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	
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<u>2022년 12월 31</u>	<u>2025년 12월 31</u>
<u>일</u>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「한국	<u> 일</u>
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	
촌공사(이하 이 조 및 제13조	
에서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	
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	
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②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	②
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	
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・	
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5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 다만, 한국농어촌공	
사가 교환・분합하는 경우에는	

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